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6013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연합회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소송대리인 D

2. D

변론 종결 2019. 10. 31

판결 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1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고들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과실비율 이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총액이 279,011,850원이고, 원고가 이를 모두 부담하여 피고들도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등 원고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피해 택시 승차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외상성 뇌출혈, 흉추 분쇄골절 등인바, 당시 피해자 E이 택시 승차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 택시 측도 안전띠 착용을 촉구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책임분담비율 산정에도 참작되어야 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과 그 소유자인 피고 D은 연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원고에 대하여, 위 책임분담비율에 의한 피고들 부담액 2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태업

별지